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멀티플변액유니버설통합종신보험

나. 보험의 종류

1종(보장형 계약)	1형(기본형)
	2형(채감형)
	3형(실속형)
2종(적립형 계약)	-

※ 다만, 2종(적립형 계약)은 1종(보장형 계약)에서 전환을 할 때에만 적용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구분	1종(보장형 계약)			2종 (적립형 계약)
	1형(기본형)	2형(채감형)	3형(실속형)	
보험 기간	종신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Y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종신
		제2보험기간 : Y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2형(채감형)의 피보험자의 은퇴나이(Y, 이하 “은퇴나이” 라고 하며, 최초 선택 이후 변경 불가)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자가 55세, 60세, 65세 중 선택

※ 3형(실속형)의 피보험자의 은퇴나이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자가 60세, 65세 70세 중 선택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보장형 계약

(가) 1형(기본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5년납	만 15세 ~ 70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68세	
15년납	만 15세 ~ 64세	
20년납	만 15세 ~ 60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65세	
80세납	만 15세 ~ 63세	

(나) 2형(체감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은퇴나이 55세	은퇴나이 60세	은퇴나이 65세	
5년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15년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8세	
20년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4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8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46세	만 15세 ~ 41세	

(다) 3형(실속형)

- 30%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은퇴나이 60세	은퇴나이 65세	은퇴나이 70세	
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52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3세	만 15세 ~ 47세	
20년납	만 15세 ~ 54세	만 15세 ~ 47세	만 15세 ~ 43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38세	
7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38세	만 15세 ~ 28세	
80세납	만 15세 ~ 29세	만 15세 ~ 18세	-	

- 50%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은퇴나이 60세	은퇴나이 65세	은퇴나이 70세	
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4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58세	
2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6세	만 15세 ~ 54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80세납	만 15세 ~ 54세	만 15세 ~ 46세	만 15세 ~ 41세	

- 70%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은퇴나이 60세	은퇴나이 65세	은퇴나이 70세	
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2세	
2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9세	만 15세 ~ 58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5세	
8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8세	만 15세 ~ 54세	

(2) 적립형 계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전기납	만 15세 ~ 70세	월납

※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피보험자의 전환신청일의 전환나이를 기준으로 함

다만, 피보험자를 교체할 때에는 전환된 피보험자의 전환신청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매년 (기본보험료 × 12 × 200%)로 한다.

(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가)’ 및 ‘(나)’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가 매월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기본보험료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만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다.

(2) 추가납입보험료

(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text{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 \times 200\% \\ & \quad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 (2) ‘(1)’에 따라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매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월대체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은 고액계약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10,000원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보장형 계약에 한함)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최대 35개월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표준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

한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이하 보장형계약에서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하 보장형계약에서 “연체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 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실효된 경우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2) 변액보험은 ‘(1)’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3)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을 할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납입된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4) ‘(3)’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나)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다)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5) ‘(1)’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나. 적립형 계약

(1)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의 금액(이하 적립형계약에서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하 적립형계약에서 “연체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변액보험은 ‘(1)’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3)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을 할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납입된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4) ‘(3)’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나)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다)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5) 전환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 이후 ‘23. 적립형 계약의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가)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2)’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전환일 이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신청일 + 제3영업일」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3)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 (4) ‘(1)’ 및 ‘(2)’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 이내에 한하며, 인출 후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 잔액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5) ‘(1)’ 및 ‘(2)’ 에도 불구하고 전환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에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6)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으로 적립한다.

다.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가) 36개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3) 중도인출로 ‘21.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기본사망보험금(이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가) 1형(기본형)

보험가입금액

(나) 2형(체감형)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은퇴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동안 매년 5%씩 정액 체감한 금액

(다) 3형(실속형)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아래의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			
	구분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		
	지급률	30%	50%	70%

나. 적립형 계약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

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납입방법에 따라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14.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보장형 계약

(가) 제1회 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과 승낙일 중 늦은 날
- 이체금액 :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나) 제2회 기본보험료의 경우

①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②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과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중 늦은날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③ 「월계약해당일」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다)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납입한 경우

㉠ 「월계약해당일 - 제3영업일」이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㉞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용한 금액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 납입한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용한 금액

(라)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용한 금액

(2) 적립형 계약

(가) 기본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용한 금액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납입일 + 제3영업일」
-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용한 금액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나. 적립형 계약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는 경우에 공제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및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2)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17.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와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2) ‘(1)’ 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나. 적립형 계약’ 에서의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3) ‘(2)’ 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란 해당 감액 (또는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2)’ 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적립형 계약

- (1)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계약자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 (2) ‘(1)’ 에도 불구하고 최저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적립형 계약에서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

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3) ‘(2)’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2)’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9.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0.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환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1.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1)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2) ‘(1)’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형별 및 보험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1형(기본형)
- 보험가입금액
- (나) 2형(체감형)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은퇴나이 계약해당일로부터 은퇴나이 이후 경과기간(최대 10년)동안 매년 5%씩 정액 체감한 금액

(다) 3형(실속형)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아래의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한 금액			
	구분	제2보험기간 사망보험금 지급률		
	지급률	30%	50%	70%

- (3) ‘(2)’ 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 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형(체감형) 또는 3형(실속형)의 제2보험기간이 개시될 때 「기본사망보험금」은 ‘(2)’ 의 금액에서 제1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을 더하고, 중도인출한 중도인출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보험가입금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이 계약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2.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1)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한다.
- (2) ‘(1)’ 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적립금이 “0” 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3) ‘(2)’ 에서 「예정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다.

(5) ‘(4)’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지된다.

(6) ‘(4)’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금액에 표준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는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중지되고 이후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정상 납입할 수 있다. 이때 ‘(5)’에 따라 해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일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특약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 및 계약관리비용(기타 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7) 계약자가 ‘(6)’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납입된 금액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대해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을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써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23. 적립형 계약의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가.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나’ 에도 불구하고 전환 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전환후 경과월까지 납입해야 할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총액의 합계(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한다.

나. 계약유지보장은 전환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의 안정형 펀드 투입비율을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의 미납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다.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1)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인 경우

(2)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의 안정형 펀드 투입비율을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 (3)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안정형 펀드 편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한 경우

라.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계약유지보장의 재신청은 할 수 없다.

마.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 계약에 한함)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따라 계산하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으로 평가한

다.

-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보장형 계약에 한함)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 ① **채권형** :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6년 7월 24일)” 으로 한다.
- ② **혼합1형** : 채권[국공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등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혼합1형(설정일 2006년 7월 24일)” 으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 ① **안정형** :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제예금 등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안정형(설정일 2004년 10월 4일)” 으로 한다.
- ② **주식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

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의 “주식혼합형(설정일 2007년 11월 20일)”으로 한다.

- ③ **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5년 7월 5일)”으로 한다.
- ④ **Ko-BRICs주식형** : KOSPI200 인덱스와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Ko-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⑤ **BRICs주식형** :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⑥ **Index혼합형** : KOSPI 200 인덱스를 추종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Index혼합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⑦ **글로벌리츠형** :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 으로 한다.
- ⑧ **혼합간접형** :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한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혼합간접형(설정일 2005년 6월 20일)” 으로 한다.
- ⑨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지 편입하고, 국내 채권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 으로 한다.
- ⑩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 으로 한다.
- ⑪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 으로 한다.
- ⑫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

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 으로 한다.

- ⑬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글로벌인덱스는 KOSPI200Index, S&P500Index, HSCET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 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04월 20일)” 으로 한다.
- ⑭ **K200리스크컨트롤형** : KOSPI200 관련 주식,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KOSPI200 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펀드 내 주식 투자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K200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4년 05월 07일)” 으로 한다.
- ⑮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설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05월 07일)” 으로 한다.
- ⑯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⑰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자본이익을 도모한다.

⑱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한다.

⑲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미국을 중심으로 하이일드 채권, 전환사채,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2) ‘(1)’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3) ‘(1)’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 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다음과 같다.

(가) 보장형 계약

구 분	운영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39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0712329%)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66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8109589%)

(나) 적립형 계약

구 분	운영보수
안정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9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5232877%)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595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6315068%)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2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1520548%)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2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1520548%)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36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9890411%)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51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2356164%)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53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4534247%)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28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7684932%)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8780822%)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32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8780822%)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30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1794521%)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5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4520548%)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43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1917808%)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3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1780822%)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4500% (매일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012328767%)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다음을 한도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구 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혼합1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나) 적립형 계약

구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안정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6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4383562%)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0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2739726%)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리츠 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55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1506849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8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8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2191781%)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글로벌 인덱스 리스크컨트 롤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2000% (매일)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95%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5479452%)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534247%)
K200리스크 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12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3287671%)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글로벌다이 나믹멀티에 셋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20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5479452%)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밸류고배당 주식재간접 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중소형Best 주식재간접 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273973%)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글로벌배당 인컴주식재 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인컴앤그로 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7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191780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30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821918%)	매년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150% (매일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의 0.0000410959%)

- (3) ‘(2)’에서 정한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실제 지급한 보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회사는 운영보수에서 그 초과분을 충당한다.
- (4)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 및 ‘(2)’에서 정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

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라. 펀드의 선택 및 변경

(1) 보장형 계약

(가) 보장형 계약에서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의 ‘(1)’의 ‘(가)’에서 정한 펀드 중 1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및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변경 또는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회사는 ‘(가) ‘ 및 ’ (나)’에 따라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최저 펀드 이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 회사는 ‘(가) ‘ 및 ’ (나)’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한다. 다만, 펀드 변경을 할 때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마)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2) 적립형 계약

(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할 때 계약자는 ‘나’ ‘(1)’의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적립형 계약에서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나’ 의 안정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라) 적립형 계약에서 계약자는 전환일부터 1개월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마) ‘(라)’ 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나’ 의 안정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60% 미만이 되도록 펀드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펀드적립금을 이전 하더라도 ‘나’ 의 안정형 펀드의 이전 후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바) ‘(가)’ 내지 ‘(라)’ 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 의 ‘(3)’ 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계속 납입되는 기본보험료의 펀드 변경 또는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사) 회사는 ‘(라)’ 또는 ‘(바)’ 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다만, 최저 펀드 이전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아) 회사는 ‘(라)’ 또는 ‘(바)’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의 현금을 이전 할 때 공제한다. 다만, 펀드 변경을 할 때 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자)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에서 정하는 날까지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향후 펀드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마. 적립형 계약의 펀드자동재배분

(1)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전환 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나’의 안정형 펀드의 편입비율을 60%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또한, ‘나’의 안정형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계약자적립금이 전환시점의 보장형 계약으로부터 이체되는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1)’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차.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적립형 계약에서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 (3) 회사는 적립형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월대체보험료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카.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①’ 내지 ‘③’ 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 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2)’ 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5.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14.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자금이체를 할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26.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7.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아래의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1) 계약일이 10년이 지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 (2) ‘28. 기타 사항’의 ‘마.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금전환 되지 않은 계약
- (3) 전환을 신청할 때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책임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 나. ‘가’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 다. ‘가’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 신청후 전환일까지는 전환을 신청할 때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라. ‘가’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1명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될 피보험자(이하 “전환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1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마. ‘라’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할 경우, 전환일부터 주계약 피보험자는 전환 피보험자로 교체되며, 기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바. ‘라’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 기존 피보험자 및 전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사.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책임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아. ‘사’의 경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이체금액으로 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계약자가 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에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 이전에 따른 수수료는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자.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차. 적립형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다시 보장형 계약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

28. 기타 사항

가.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의 10배

나.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의 해지환급금

다.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 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 (8)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연금전환 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연금전환을 위한 전환일시금은 「연금전환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전환시점은 「연금전환 신청일 + 제3영업일」로 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 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적립형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